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4.

발 의 자 : 박수현 · 조인철 · 양부남
이개호 · 박용갑 · 서삼석
임오경 · 한정애 · 김영배
윤종오 · 이정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.

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88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지방이전 및 혁신도시”를 “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”를 “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”로, “혁신도시 시책”을 “혁신도시등시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혁신도시시책”을 “혁신도시등시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혁신도시”를 “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혁신도시시책”을 “혁신도시등시책”으로, “혁신도시 활성화”를 “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 활성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“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”을 “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이 아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공공기관의 <u>지방이전</u> 및 <u>혁신도시</u> 활성화)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이전대상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<u>지방이전</u> 및 <u>혁신도시</u> 활성화를 위한 시책(이하 “ <u>혁신도시</u> 시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25조(공공기관의 <u>지방이전</u> 과 <u>인구감소지역</u> 및 <u>혁신도시</u> 활성화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이전</u> 과 <u>인구감소지역</u> 및 <u>혁신도시</u> 활성화----- ----- <u>혁신도시</u> 등시책----- -----.
② 정부는 <u>혁신도시</u>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혁신도시</u> 등시책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혁신도시</u>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	3. <u>인구감소지역</u> 과 <u>혁신도시</u>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<u>혁신도시</u> 시책	③ ----- ----- ----- <u>혁신도시</u> 등시

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 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<u>혁신도시 활성화</u>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)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</u>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⑥·⑦ (생략)	<u>책</u>----- ----- -----<u>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 활성화</u>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<u>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</u>----- -----. ⑥·⑦ (현행과 같음)
--	---